

審 查 報 告 書

1. 審査經過

가. 發議日字 : 1998. 9. 15

나. 發議者 : 賈大鉉議員外 5人

다. 回附日字 : 1998. 9. 16

라. 上程日字 : 1998. 9. 21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賈大鉉 議員)

가. 改正理由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98.8.31)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된 조례 모델(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함.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등의 사무를 처리함(안 제2조)

-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3조)
-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외의 일반적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안 제4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전문위원의 임무 부여를 명확히 하고,
- 행정자치부의 조례 모델(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8 호
의결년월일	1998. 9. 22 (제 호)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자	가대현의원외 5인
제안년월일	1998. 9. 15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
----------	----

제안년월일 : '98. 9. 15

제안자 : 가대현의원
외 5인

1. 제안이유

- '98. 8. 31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함(안 제2조)
- 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3조)
- 다.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외의 일반적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안 제4조)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서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 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①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